

붙임 1)

# 허 가 조 건

**제1조(사용목적)** 사용목적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.) 가평썰매장 매점(식당)을 사용·허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한다.

**제2조(사용기간)**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용료)**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로 최초년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, 2차년도 이후 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31조에 의거 산정하여,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전액 납부한다. 다만,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.

<p>2차년도 이후 사용료(연간)</p> <p>= (당해년도 재산가액×입찰에 의한 첫해사용료) /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</p>
--

**제4조(사용료의 납부)** ① 사용료는 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 또는 공단 계좌로 입금하여 납입할 수 있다.

② 위의 제1항에 의한 첫해 사용료를 납기 내 미납 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.

**제5조(사용료의 반환)** 사용료의 반환은 아래표에 따른다.

취소 사유	반환 사용료
1. 제11조 제2항~제6항까지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	없음
2.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 경우	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%금액
3.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	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%금액

**제6조(보험증서의 제출)**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서 교부일까지 "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" 또는 손해를 입은 고객을 보험금수령자로 하는 보험증권을 피해인 1인당 3천만원 이상, 사고건당 1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(식품위생과 관련한 상해보험) 및 화재보험(건물, 집기물품, 시설 기준금액) 계약을 체결

하고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.

**제7조(사용허가 표찰의 부착)** 사용인은 사용허가와 동시에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, 사용기간 및 사용자 성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사용허가 재산의 보존)**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재산훼손 시 필요한 보수를 사용인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)**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사용인의 행위제한)** 사용인은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-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
-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
-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
**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)** 공단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①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
- ②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
- ③ 허가 받은 재산을 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
- ④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가 취소된 때
- ⑤ 2차년도부터의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(3회 이상)
- ⑥ 기타 공단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**제12조(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)**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인 해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

**제13조(사용허가의 취소요청)**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새로운 운영자 선정 시까지 식당(매점)운영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사용인은 썰매장 운영기간 내에 사용허가의 취소요청을 할 수 없다.

**제14조(사용재산의 반환)**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

할 때에는 공단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15조(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)**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, 사용재산의 원상복구를 공단이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)**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)**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**제18조(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)** 본 허가재산 및 비품에 대하여는 일체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.

**제19조(판매가격 및 종류)** ① 사용인은 판매물품의 종류 및 금액 산정에 대하여 공유 재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② 공단은 사용자의 영업행위 중 부정·불량식품 판매(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, 비위행적 영업행위 등), 기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판매 금지할 수 있으며,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.

③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모든 판매 품목은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. 또한 식당(매점)에서 취급한 불량제품이나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측에 즉시 보고 하여야하며 식당(매점) 측에서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④ 판매물품 준수사항 : 고객에게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(법, 시행령, 규칙)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법조항을 위배하여서는 안된다. 또한 판매물품은 보건위생 및 관광단지환경 조성 등을 고려

하여 고객의 안전과 보건 위생에 적합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⑤ 판매물품의 단가 : 판매 품목 및 단가를 게시 부착하여야 하며 취급 물품의 판매 단가 책정은 가평균 관내 및 인근 시·군의 가격에 준하여 공단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.

**제20조(식당 및 매점운영 등)** ① 사용인은 식당(매점)을 운영함에 있어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야하고,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인은 물품 도난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철저하여야 하며, 도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
③ 허가재산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시설 등은 설치를 금지하며 식당(매점)내부시설(각종 편의시설 등)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, 이 경우 사용자는 가평균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 설치한 시설물은 허가기간 종료 후에 모두 회수·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 또한 기 설치된 공단시설물의 훼손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어구의 해석)**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.

**제22조(사용인 시설물 및 물품처분)** 사용인이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은 사용인이 구입하고 사용기간 만료 시 사용인이 이를 회수 처분하여야 한다. 단, 공단에서 제공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23조(연고권의 배제)** 사용인의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허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모든 권리주장을 배제한다.